

# kiri Weekly

2014.8.25 제297호

## 이슈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과 검토 방향

## 글로벌 이슈

생명보험회사의 성공적 빅데이터 활용방안

인도의 보험회사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와 시사점

호주,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2014~17년 국가전략 도입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문의: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 특징과 검토 방향

이상우 수석연구원

## 요약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외부에 연기금을 설치하여 연기금이 기업의 역할(금융회사 선정 및 급부지급 등)을 대신하게 하는 구조임.
  - 법적으로 독립된 연기금은 집행기구(이사장, 이사, 감사)와 노·사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기금위원회)를 통해 연기금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참여형 연금제도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 때문에 현행 계약형제도보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여에 따라 더 많은 이해상충과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함.
- 호주는 퇴직연금제도가 성공한 사례이지만 기금형제도 자체가 성공한 사례로 평가하기는 곤란함.
  - 호주 퇴직연금제도 성공(가입률 95%, 적립금 규모 세계 3위 등)은 퇴직연금이 호주(국민연금 부재)에 핵심적인 연금제도이고, 가입 강제화와 소득이 있는 전 국민(파트타임, 자영업)에게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가입자 편의를 위한 디폴트제도 도입과 정부 보조금 또는 강력한 세제혜택 등이 주요 요인임.
- 반면, 일본의 경우 연기금의 부실 금융회사 선정, 금융회사의 연기금 적립금 불법 운용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AIJ운용사의 연기금 대규모 사기사건(2012년)'으로 인해 기금형제도에서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된 대표적인 사례임.
- 따라서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해상충과 대리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수탁자 책임과 수급권보호)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기금형제도 도입시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적용 가능한 기업규모를 검토하고 기금위원회 및 이사회, 집행기구(이사, 감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수탁자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최소 적립규제, 적기시정 조치, 예금자 보호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등 수급권 보호 장치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가 제3자 감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검토 필요
- 선진국의 성숙된 금융산업 환경과 달리 다양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기금형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계약형제도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유의해야함.
  - 특히, 일본의 실패사례는 대리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는 일본의 부실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일본 기금형제도의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따라서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선진국 수준의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등의 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러한 안전장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추이를 보가며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1. 검토 배경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2월에 시행된 이후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중소기업 가입이 저조하는 등 미진한 측면이 있음.
  - 외형적으로는 시행 8년 만(2013년 말)에 약 470만 명이 가입하여 4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연금자산이 약 84.3조원 규모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음.
  - 그러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중소기업 가입이 저조하고,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가입자 참여도가 낮으며,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운용되어 운용상품 선택폭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사적연금 활성화 TF(KDI·KLI·KCMI 등) 공동 연구진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2014. 8. 13)’에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함.
  -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계약형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과 현행 계약형제도에서 기금형 요소를 도입하고 연금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함.
  - 그러나, 세미나 토론회에서는 근로자 대표(한국노총)와 경영자 대표(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이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적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이에 정부는 정책세미나의 제안 내용과 부처 간 협의,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임.<sup>1)</sup>
  - 다만, 언론 등은 현재 기금형제도 도입 방안이 현재 가장 유력한 정부안으로 보도하고 있음.<sup>2)</sup>
  
- 이에 보고는 기금형제도가 현행 계약형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기금형제도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퇴직연금 지배구조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최근 해외사례로 주목 받고 있는 호주가 과연 성공적인 기금형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인지를 살

1) 기획재정 보도해명자료(2014. 8. 17).

2) 동아일보(2014. 8. 18), 「퇴직연금 가입 中企에 보조금 준다」, 파이낸셜뉴스(2014. 8. 21), 「퇴직연금 5,000만 원 포함 개인 예금 1억까지 보호」 등.

펴보고, 반대로 기금형제도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일본 후생연금기금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 이와 관련 우리 원은 보고서<sup>3)</sup> 등에서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 있음.

## 2. 계약형과 기금형제도 의의와 특징 비교



### 가.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의의

■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연금 적립금 소유자(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이하 '연금 소유자')에게 연금이 약속대로 지급되도록 연금을 운영하는 메커니즘을 말함(OECD 2004; 류건식 외 2013).

- 즉, 부담금 납입, 적립금 운용, 급여지급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과 관련한 일련의 시스템을 말함.
- OECD는 퇴직연금 지배구조에 대해 연금자산을 누가 소유하고 소유한 연금자산을 누구에게 위탁하는가에 따라 크게 계약형과 기금형의 법적인 형태로 구분하고 있음(Fiona Stewart 외, 2008).
-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수탁자(연금 소유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좋은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연금제도 운영관리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임(Keith P. Ambachtsheer, 2007).

■ 좋은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또 다른 이유는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상충과 이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임.

- 일반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에서도 연금 소유자(위탁자)와 수탁자(금융회사 등) 간에도 서로 추구하는 이익과 목적 차이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경우 고유계정과 혼합되지 않게 운용되어야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본래 취지와 상반되게 운용회사의 자사상품 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과도한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동일상품에 대한 가입자·사업자 간 차별적 금리 제시, 부당 수수료 부가 등의 불건전 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음.

3) 류건식 외(2013. 1),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2013-2.

이상우(2013. 11), 「계약형 퇴직연금의 제도개선 필요성과 지배구조 개선방향」, 『KiRi weekly』, 제260호,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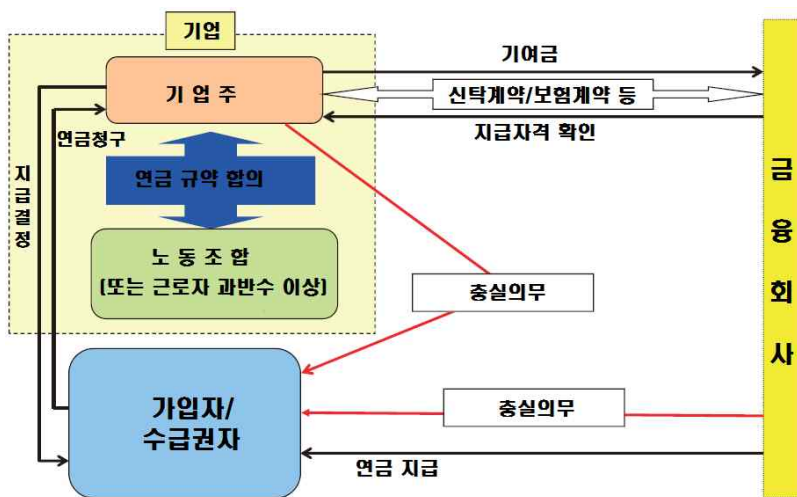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합의 절차가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이익에 따라 기업 주도로 퇴직연금제도가 설계되고 금융회사가 선정될 개연성이 높음.

## 나.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비교

■ 계약형제도는 한마디로 기업이 금융회사와 1:1로 계약한다는 의미임(〈그림 1〉 참조).

- 즉, 기업주는 근로자와 합의절차를 거쳐 연금사업자 선정과 연금규약(연금계약서)을 확정하고, 연금 관련 전체 업무(운영관리업, 자산관리업, 상품제공업 등)에 대해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함.
- 이때 기업주는 연금관련 전체 업무를 일괄 위탁하거나 부분 위탁할 수 있으나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음.<sup>4)</sup>
- 금융회사는 연금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 기록관리, 운용상품제공 등의 경우 외부 전문회사에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따라서, 계약형제도는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과 위탁업무의 재위탁 등으로 연금소유자와 수탁자,<sup>5)</sup> 수탁자와 수탁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1〉 계약형(DB형)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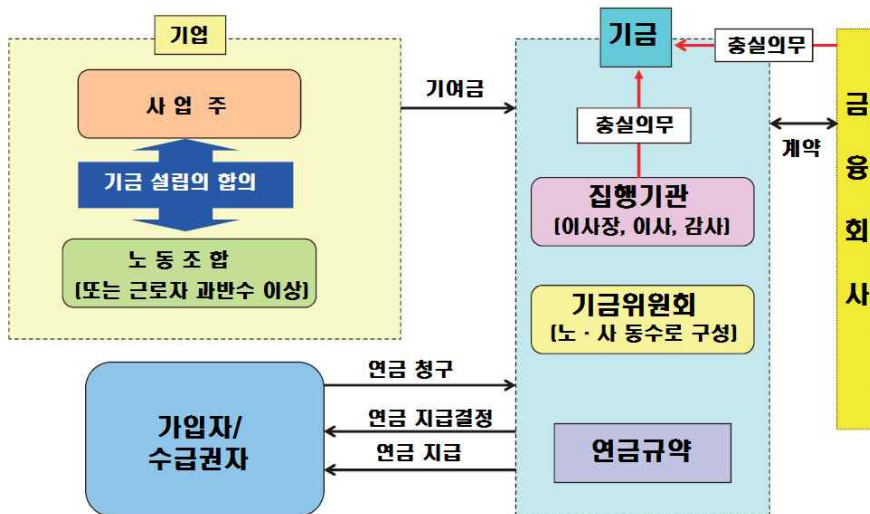
자료: 田川勝久(2014, 6), 한국연금학회 국제세미나 자료.

4) 이 경우 수탁자산에 대해 통제할 권한이 있는 운영관리업자가 자산관리업을 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적절한 지휘 통제가 어려워 양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대두됨.  
 5) 수탁자에는 운용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 상품제공회사 등이 포함되며, 근로자의 후불임금 성격의 퇴직급여를 기업이 보관하고 있다는 개념에서 기업도 넓은 의미로 수탁자에 포함되기도 함.

■ 반면, 기금형제도는 기업이 외부에 연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구조를 말함(그림 2) 참조).

- 계약형제도에서 기업은 연금규약을 작성하고 퇴직연금제도 종류와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기업은 기여금 부담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연금관련 역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독립된 연기금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임.
- 연기금은 독립된 법인으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 등에서는 기업내 이사회가 연기금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
- 이때 연기금은 기업주 역할<sup>6)</sup>과 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sup>7)</sup> 일부까지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그림 2〉 기금형(DB형) 지배구조



자료: 田川勝久(2014 .6), 한국연금학회 국제세미나 자료.

- 기업의 기여금은 연기금에게 납입되며, 연기금은 기금운영과 관련된 제반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구와 기금위원회<sup>8)</sup>를 설치할 수 있음.
- 또한 연기금은 운영관리업무 일부를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외부 금융회사 또는 전문회사에 일괄 위탁 계약, 부분 위탁계약 방식으로 아웃소싱 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산관리업무만 위탁할 수도 있음.

6) 금융회사 선정 및 계약, 제도 선택, 연금규약 제정, 적립금 운용전략 수립 및 지시, 연금 지급결정 등임.  
 7) 운용관리업무는 제도 컨설팅 및 설계업무, 기록관리(Record Keeping)업무, 부담금 계산업무, 교육관리,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 신규 및 탈퇴 접수, 연금급부 지급 등임.  
 8) 기금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출하고 기업주가 임명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노·사 동일한 비율로 구성됨.

- 따라서, 기금형제도에서도 연기금(집행기구, 기금위원회)과 다양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전문회사, 자산관리회사, 상품제공회사 등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함에 따라 계약형제도보다 이해상충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다. 기금형제도 평가

- 기금형제도는 가입자가 연기금 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운용과 관리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참여형 지배구조임,
  - 가입자 의사가 상대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고 연기금 내에 집행기구, 기금위원회, 내부감사 설치에 따라 연금관리업무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표 1〉 기금형(DB형) 지배구조

구분	계약형	기금형
연금관리형태	금융회사에 일괄위탁	독립적인 연기금 설치
관리 및 운용주체	금융회사 (운영기관, 관리기관)	연기금 운용의 외부위탁
연금의 주요결정	계약 (경영자주도)	기금위원회 (노·사 동수)
근로자 참여	DB는 형식적 참여, DC는 근로자 직접투자	노·사가 기금위원회 구성원 선출
운용 감독	금융기관이 대상	개별연금기금감독
운용 감독	한국, 일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미국, 영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 일본

자료: 류건식 외(2013)에서 일부 수정.

- 그러나 기금형제도는 연기금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여에 따른 제도 복잡성과 이해력 부족, 높은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연기금과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연기금 운영비용, 금융회사(운영·자산관리기관 분리 운영) 비용, 연기금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마련 등의 관련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연기금은 기업과 분리되어 독립된 법인으로서 독립 재산제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적립금 운용손실 등으로 연금재정이 부실할 경우 연기금과 가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함.
  - 기금위원회 구성원들이 가입자와 기업주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이나 연금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Keith P. Ambachtsheer, 2007).

### 3. 해외 사례



#### 가. 호주

- 호주는 미흡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강제가입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가 자본시장 발전에도 영향을 줌.
  - 호주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한 공적연금 부재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2년 종전 임의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 가입을 의무화한 확정기여(DC)형 기금형제도를 도입함.
- 호주 퇴직연금제도는 시행 20년만에 연금자산이 약 1.4조억 달러(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로 성장하고 가입률도 1987년 40%에서 2012년 95%를 상회하는 등 성공적인 퇴직연금제도 모델로 평가됨.
  - 또한, 호주는 연기금 가입시 가입자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이나 산업에서 설립한 퇴직연금기금뿐 아니라, 다른 기업, 산업 및 금융기관이 설립한 기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호주 퇴직연금제도가 이처럼 발전한 것은 기금형제도 도입보다는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즉, 호주는 국민연금 부재로 퇴직연금제도가 거의 핵심적인 연금제도이고, 퇴직연금 강제화, 소득이 있는 국민(비정규직 및 파트타이머, 자영업 등)에게 가입자격 확대, 임금인상분의 퇴직연금 적립, 기본펀드(default fund)<sup>9)</sup>의 도입, 보조금 또는 강력한 세제혜택이 주요 요인임.<sup>10)</sup>
  - 특히, 호주의 경우 저 소득자(연간 37,000호주달러 이하)에게 기여금의 15%(연간한도 500호주달러)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가입단계에서 기여금에 대해 최저세율(15%)을 과세(일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8%)하며, 60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9) 투자경험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투자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default상품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운용되는 상품임.

10) 류건식·이상우(2013. 2), 「호주의 퇴직연금 세제개혁과 시사점」, 『KiRi weekly』, 제220호, 보험연구원.

## 나. 일본

- 일본 퇴직급여제도는 우리나라와 함께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병행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지만 대표적인 기금형제도 실패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 일본은 1960년대 계약형과 기금형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는 병행 방식의 대표적인 국가임.
  - 또한 일본은 기존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2012년 종료) 외에 2001년 퇴직연금 개혁에 따라 새로운 퇴직연금제도(계약형 또는 기금형 확정급부 기업연금, 확정기여형연금)가 도입됨.
  -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은 두 가지 형태의 기금형제도와 다양한 계약형 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고 있음.
  - 일본은 퇴직연금 개혁 이후 기존 후생연금기금에서 새로운 기금형 확정급부 기업연금으로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일본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기금형제도가 계약형제도보다 수익률이 현저하게 높다고 할 수 없음.
  - 대부분의 연도에서 기금형제도가 계약형제도보다 수익률이 다소 높았으나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계약형제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기금형제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하락하였음.

〈표 2〉 일본 계약형 및 기금형 퇴직연금 수익률 추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약형	n.d	n.d	4.15	16.50	4.36	-9.10	-15.81	12.40	-0.36
기금형	-12.46	16.17	4.74	21.08	4.62	-12.03	-19.81	13.26	-0.16

주: 1) 2002~2008년 계약형의 경우 확정급부기업연금, 기금형의 경우 후생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

2) 2009~2010년 확정급부기업연금 계약형 및 기금형 운용수익률.

자료: 企業年金聯合會(各年度), 資産運用實態調査結果.

- 일본이 실패한 사례로 평가되는 이유는 금융회사의 연기금 대규모 사기사건에 따라 연금 가입자가 큰 손실을 입으면서 기금형제도에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대리인 문제 등이 나타났기 때문임.
  - 사건의 발단이 된 후생연금기금은 1966년 퇴직연금제도에 공적연금의 일부 기능을 부가(공적 노

령연금 일부분을 국가가 운영하지 않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후생연금기금은 1990년대 말까지 가입자 1천 2백만 명과 53조 엔의 연금자산을 보유한 대표적인 퇴직연금제도로 발전해 왔음.

- 그러나, 후생연금기금은 1990년대 말 거품경제 붕괴 이후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누적된 운용손실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금자산 재평가와 퇴직급여채무 급증 등으로 연기금 재정부실을 만회해야하는 투자환경에 직면하게 됨.

■ 이러한 환경 하에서 연기금 운용회사가 유치한 연금자산을 불법으로 운용하여 큰 손실을 입히는 ‘AIJ 연기금 사기사건(이하 ‘AIJ사건’)이 2012년에 금융당국에 의해 발각됨.

- AIJ는 연기금 전문 대형 운용회사로서 연기금 운용사 선정을 위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허위로 운용수익률을 공시 또는 광고를 하고 고금리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확장함.
- 이후 AIJ운용은 유치한 수탁자금을 수탁자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 자산 등에 불법운영하여 매년 큰 폭의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운용보고서를 개별 연기금에 제공하는 등 이른바 폰지사기(Ponzi scheme)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함.

■ 결국 금융청이 2012년에 사기사건을 적발하였는데 연기금 수탁자금(약 2천억 엔) 90% 이상 손실이 발생하고 84개 연기금에 가입된 88만 명의 가입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일본에서 AIJ사건은 연기금 가입자 대부분이 택시 및 버스회사, 백화점에 종사하는 영세한 연기금으로 이루어져 저소득계층들이 연기금의 손실로 연기금이 해산 또는 파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으로 이슈로 받아들임.
- 일본 사례는 연기금의 방만하고 안이한 운영, 연기금의 비전문성, 연금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결여, 제3자 감시인 역할 미흡, 운용회사 고금리 제공 및 기만 영업, 운용보고서 등 자료 조작, 연기금 자산 불법적 전용 또는 운용, 연기금과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감독 부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4. 기금형제도의 검토과제



■ **현형 계약형제도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해상총과 대리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작용 방지장치 도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 기업 비용부담

- 기금형제도 도입시 기금위원회 설치와 수탁자 전문지식 교육 등으로 많은 운영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자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와 같은 기업의 비용부담은 자칫 퇴직연금가입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기업의 비용부담이 퇴직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형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금형 제도를 모든 기업에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재무력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 수탁자 책임 규제

- 기금형의 경우 기금위원회 및 이사회 등에 대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수탁자 책임이 보다 요구되므로 관련 규정 정비가 요구됨.
  - 기업, 연기금(집행기구, 기금위원회),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상품제공기관, 제3자감시인, 투자자문회사, 제도 건설업자 등 수탁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이 요구됨.
- 수탁자별로 신의 성실의무(duty of prudence),<sup>11)</sup> 충실의무(duty of loyalty),<sup>12)</sup> 분산투자 의무, 법령준수 의무 등과 같은 수탁자 책임이 체계적으로 명시될 필요
  - 기금형제도를 도입한 미국 ELISA법(퇴직연금 관련법)과 영국 연금법은 수탁자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연기금 운용에 따른 수탁자 책임을 강화함.
- 따라서 미국 및 영국 등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탁자 책임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검토가 절실히 요구됨.

11) 신중인(Prudent Person)으로서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12)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것.

## ■ 수급권 보호 장치

- 기금형 제도에서는 연기금이 운용 책임을 직접 지시하기 때문에 연기금 부실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보호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됨.
- 미국 및 일본 등은 연기금의 대규모 운용손실과 연기금 파산으로부터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금 지급보증제도 등과 같은 수급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채권자 우선변제 제도 등과 같은 협의의 수급권 보호 장치만 존재
- 따라서 최소 적립규제,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전적 수급권보호 장치와 더불어 예금자보호제도,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 등과 같은 사후적 수급권 보호 장치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 ■ 감시가능 체계

- 기금형의 경우 계약형제도보다 근로자와 수탁자 간의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탁자에 대한 감시 및 견제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 등이 제3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검토 필요
- 즉, 수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리사 및 공인회계사 선임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거나 정부차원에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함.
  - 현재 분산된 감독 기능을 개선하고 감독당국이 개별 기금별로 감독하기 위한 통합감독기구 등 효율적 퇴직연금 감독기구 마련을 요구

## 5. 시사점



■ 기금형제도는 연기금 내부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가입자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현행 계약형제도보다 선진화되고 참여형 퇴직연금제도인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독립적인 연기금 설치와 기금위원회 및 집행기구 구성, 다양한 연금사업자와 컨설팅 및 투자자문회사 등의 관여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자의 구성으로 더 많은 이해상충과 이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선진국의 성숙된 금융산업 환경과 달리 다양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환경 하에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계약형제도보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유의해야할 것임.
- 특히, 일본 연기금 대규모 사기사건은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등에 대한 일본의 부실한 대응이 가입자 연금 삭감과 기금형제도 폐지 등과 같은 퇴직연금제도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러한 일본의 실패사례를 반면 교사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 성숙도와 연금 가입자 및 이해관계자 인식 수준에 맞추어 보다 안전한 퇴직연금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선진국 수준의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등의 안전장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러한 안전장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추이를 보가며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kiri**